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9. 24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.9.03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.9.10.
- 다. 상정일자 :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(2014.9.24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 은 영 사회복지과장

가. 제안이유

공공요금 인상, 이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09.10.01일자 조례제정 이후 동결되어 왔던 목욕탕 이용료 인상과 아울러 시설규모 대비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이용자의 지속적 증가로 타 자치구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인상으로 이용 제한 등 목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욕탕 이용료 변경(안 제8조 관련 별표)

구분	현행	개정안
일반인	4,000원	5,000원
할인대상자	2,000원	3,000원

- 2) 할인대상자를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체화 (안 제8조제2항)
- 3)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일부조문 수정 등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공공요금 인상과 이용인원 증가 증에 따라 일반인과 할인대상자 및 타 자치구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인상 및 할인대상 제한 등을 통하여 목욕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-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은 저소득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,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SH공사 성산아파트 상가 내 폐업 중인 목욕탕을 무상임대 받아 개·보수 후 설치·운영하는 목욕탕으로, 2009.10.1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이용료 인상이 없었으나 이용인원의 과밀화 등으로 이용자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수년간 물가상승 및 운영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이용료 조정요인이 있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이용료를 동결하여 왔고, 목욕탕 시설규모 대비 적정인원 초과 이용(동절기), 경영수지 악화 등에 따라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.
- 마포복지목욕탕 연도별 이용인원(일평균 이용자)을 보면, 2009년 6,619명(108명), 2010년 38,201명(129명), 2011년 52,925명(187명), 2012년 63,292명

(221명), 2013년 74,482명(260명)으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, 2013.10기준, 마포복지목욕탕 1일 평균 이용자 수 253명(100%) 중 할인·감면대상(마포거주자) 188명(74.3%), 일반인(마포거주자) 9명(3.6%), 타구 거주 이용자 수 56명(22.1%)으로 나타나고 있음.

2013년 수지분석 결과를 보면, 총수입 1억5,671만2천원에 2억2,227만8천원을 지출하여 6,556만6천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, 2014년의 경우에는 총수입 1억 8,981만6천원에 2억3,413만 5천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4,431만9천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○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, 민간위탁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또는 재위탁 사실을 공고하도록 명시하여 안 제16조에 “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” 는 규정을 신설하였음.

○ 본 조례안 제16조제3항 “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” 에서 “구” 는 이전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 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